제79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	1.품질보증 보완 절차 신설(신설)품질 인증 이후 매년 실시하는 운영실태조사 과정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,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인증업자에게 부적합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 신설2.행정처분 제재기준 강화(강화)시정명령 위반 시 인증 사용중지, 인증취소를 4단계로 단계적 처분하고 있으나, 현행 1차 처분을 삭제하여 제재처분을 3단계로 축소	1.비중요 2.비중요
2	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추가(강화)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수동작동장치의 제작검사(형식승인 기준) 요건을 추가	1.비중요
3	어선설비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요건(강화) 수동작동장치의 기능 추가, 해상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동작동장치의 보호함 설치기준 및 소화장치 정상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장치 요건 규정	1.비중요
4	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교육기관 지정 기준(신설) 제2조 및 별표1 교육기관 지정 기준	1.비중요
5	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안전진단의 대상, 주기 및 기간, 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(신설)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사업자는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 ㅇ 사업자는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2.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(신설) ㅇ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,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3.안전진단 결과의 이행(신설) ㅇ 사업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(6개월 이내) 및 이행 완료 후 안전진단 이행보고서 제출	3.비중요
6	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(신설) ○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	1.비중요
7	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·명확화(강화) o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·명확화(안 제3조제2항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독립경영 자료제출 의무 확대(강화) ○ 독립경영친족이 분리 이후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 역시 분리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의무 확대 2.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(강화) ○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거래금액 신고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○ ① 기업결합 거래금액이 6,000억원 이상이고, ②피취득회사가 국내에서 직전 3년간 (ⅰ)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·용역을 판매·제공하였거나 (ⅱ)국내 연구개발 시설 임차 또는 연구 인력을 활용하며 그 연간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등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 3.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금지(강화) ○ 벤처지주회사(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한정)의 자회사, 손자회사, 증손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)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벤처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.벤처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제출(강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화) ㅇ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매년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함 5.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부과(신설)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 - 총수일가가 20%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명칭, 소재국, 설립일, 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-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명칭, 소재국, 설립일, 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출자현황 -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국외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방법 6.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공시의무 부과(신설) ㅇ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-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(거래금액)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의 5%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(단, 상품·용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) -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상품·용역거래는 총수일가가 20%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 7.사업자 간 교환시 경쟁제한 우려의 유형 구체화(신설)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교환합의 금지대상 정보를 규정함 1.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2. 출고량, 재고량 또는 판매량 3. 상품·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·대가의 지급조건	